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682호

시행일자 2019. 2. 7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[국민건강보험공단]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-303호 (2019.1.18.)

3. 위호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‘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’, ‘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다빈도 착오청구 사례	요양기관 협조사항	근거
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·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	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	건강보험법 제43조 (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),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(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)
약사가 입원·해외출장 중 약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	약사가 입원·해외출장 중인 경우 근무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	건강보험법 제43조(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), 약사법 21조(약국의 관리의

		무), 약사법 23조(의약품 조제)
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 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 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 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	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% 산정(산정코드 두 번 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)	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 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

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